

서울특별시교육청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

(홍성룡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26
----------	------

발의년월일 : 2020년 8월 12일

발의자 : 홍성룡, 김화숙, 한기영, 강동길,
김기대, 김정태, 김제리, 김춘례,
박순규, 양민규, 유 용, 이광호,
이동현, 장상기, 황인구, 최웅식,
임종국 의원(17명)

1. 제안이유

- 일본이 일제 강점기에 행한 강제징용, 위안부 등 반인륜적 범죄행위에 대한 사과와 배상은커녕 역사를 왜곡하는 등 침탈행위를 계속하고 있는 것에 대해 서울특별시교육청 차원에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가. 조례의 적용을 받는 적용대상 기관을 규정함(안 제4조)
- 나.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사용 제한 관련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5조)
- 다.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사용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규정함(안 제6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참조
- 다. 기 타 : 해당없음

서울특별시교육청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본 제국주의를 연상시키는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 선량한 미풍양속 유지 및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이란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군사기와 조형물 또는 이를 연상시키려는 목적으로 사용된 그 밖의 상징물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적용대상 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교육청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과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관 각급 학교(이하 “기관”이라 한다)로 한다.

제5조(교육감의 책무) 교육감은 제4조에 따른 기관에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이 사용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교육감은 제4조에 따른 기관을 대상으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① 교육감은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시책 등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사용 제한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한다.

1.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 시책의 수립
2.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에 대한 판단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의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8조(교육 분위기 조성 등) ① 교육감은 제4조에 따른 기관에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을 지양하는 교육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분위기의 조성을 위하여 행사 및 캠페인 등을 실시할 수 있고, 서울특별시, 자치구, 시민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교육) 교육감은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을 위하여 제4조에 따른 기관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교육청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 제6조(실태조사), 제7조(위원회의 설치), 제8조(교육 분위기 조성 등), 제9조(교육)에 따라 비용 발생
- ※ ① 단, 같은 조례안 제6조(실태조사)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서울시교육청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각급 학교 등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을 대상으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한 공문으로 협조요청을 한다고 가정하여 비용추계 제외
- ② 안 제8조제2항 중 ‘정부부처, 서울특별시, 시민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은 양해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 MOU)를 체결하여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전제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3. 미첨부 사유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제3조제1항제1호)

나. 추계결과 ≙ 1,279,300천원(연평균 255,860천원)

- 예상되는 비용이 5년 동안 1,279,300천원으로 연평균 255,860천원임
- 추계의 전제
 - 안 제7조(위원회의 설치)에 따른 위원회 설치·운영비용은 위원회 구성을 15명으로 하되,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속 공무원 2명을 포함하고, 13명은 외부위원으로 가정하고, 위원회의 운영은 연 2회 개최를 가정(정기회 2회 기준)하여 비용추계 함
 - 안 제8조(교육 분위기 조성 등)의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을 지양하는 교육 분위기의 조성을 위한 행사 및 캠페인 비용은 서울특별시교육청이 기 추진하고 있는 ‘공익캠페인및시책홍보’ 사업의 세부사업인 ‘캠페인콘텐츠 기획 및 제작’ 사업예산의 사례를 근거로 비용추계
 - 안 제9조(교육)에 따른 서울특별시교육청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과 각급 학교의 구성원(안 제4조)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비용은 위탁하여 교육지원

을 한다고 전제하고 서울특별시교육청이 기 추진하고 있는 ‘독도교육활성화지원(독도교육지원)’ 사업예산의 사례를 근거로 비용추계

- ▶ 안 제4조에 따른 기관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을 위한 교재개발 및 콘텐츠 개발보급 등의 비용이 ‘독도교육활성화지원(독도교육지원)’의 위탁사업비와 유사하다고 가정
- 비용은 2021년부터 발생하고 추계기간 이후에도 계속 발생
- 물가상승률 미반영

다. 상세 비용추계 결과

○ 총 비용(합계) ≍ 1,279,300천원

- 총비용 = 위원회 설치·운영 + 행사 및 캠페인 비용 + 교육지원
 = 24,000 + 1,155,300 + 100,000
 = 1,279,300

(단위 : 천원)

연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합 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위원회 설치·운영 (안제7조)	4,800	4,800	4,800	4,800	4,800	24,000
	행사 및 캠페인 비용 (안제8조)	231,060	231,060	231,060	231,060	231,060	1,155,300
	교육지원 (안제9조)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100,000
	소계(b)	255,860	255,860	255,860	255,860	255,860	1,279,300
	총비용(b-a)	255,860	255,860	255,860	255,860	255,860	1,279,300

○ 위원회 설치·운영비 ≍ 24,000천원

- 산출방식 $\sum_{i=1}^5$ (연간위원회설치·운영비)_i

※ i = 비용추계 연차(2021~2025)

- 연간 위원회 설치·운영비 ≍ 연간 위원회 참석수당 + 연간 위원회 업무추진 경비
 ≍ 3,900천원 + 900천원
 ≍ 4,800천원

- 연간 위원회 참석수당 = 구성원 수 × 1인당 회의참석 수당 × 1년간 회의개최 횟수
= 13명 × 150,000원 × 2회
= 3,900천원
- ※ 참석수당 지급기준은 「2020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라 기본료 10만원, 2시간 초과 비용 5만원 등 총15만원 기준
- ※ 참석수당 지급대상은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시의원 1명 및 교육청 소속 공무원1명 총2명을 제외한 13명 지급 전제
- 연간 위원회 업무추진 경비 = 전체 위원 수 × 1인당 업무추진비 단가 × 1년간 회의개최 횟수
= 15명 × 30,000원 × 2회
= 900천원
- ※ 1인당 업무추진경비 단가는 「2020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라 3만원으로 가정

○ 행사 및 캠페인 비용 ≙ 1,155,300천원

- 산출방식 $\sum_{i=1}^5$ (연간행사및캠페인비용)_i

※ i = 비용추계 연차(2021~2025)

- 연간 행사 및 캠페인 비용 = 231,060천원

- 근거 : 서울시교육청 기 추진 사업 '공익캠페인및시책홍보' 사업의 세부사업 '캠페인콘텐츠 기획 및 제작' 예산액 사례 적용

※ 2020년 '캠페인콘텐츠기획 및 제작' 예산 준용

- 대상 : 교사, 학생 등 교육가족 및 일반 시민
- 내용 :
 - 영상, 포스터 등 제5회 서울교육 희망메시지를 담은 다양한 콘텐츠 공모전
 - 시의성 있는 공익적 사항에 대한 공익광고를 위한 콘텐츠 개발
 - 서울시교육청 홍보 콘텐츠 제작 지원

· 운영비	=	221,060	천원
- 캠페인 콘텐츠 기획 및 제작	21,896,000원 × 10회	=	218,960 천원
- 평가위원 참석수당	150,000원 × 7명 × 2회	=	2,100 천원
· 보전금	=	10,000	천원
- 공모전당선작상금	10,000,000원 × 1회	=	10,000 천원

자료 : 2020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 교육지원 비용 ≙ 100,000천원

- 산출방식 $\sum_{i=1}^5$ (연간교육지원비용)_i

※ i = 비용추계 연차(2021~2025)

- 연간 교육지원 비용 = 20,000천원

- 근거 : 서울시교육청 기 추진 사업 '독도교육활성화지원(독도교육지원)' 사업예산 사례 적용

※ 2020년 '독도교육활성화지원(독도교육지원)' 예산 준용

- 대상 : 동북아역사재단에 위탁하여 사업 운영
- 내용 : · 학생용 독도 교재 및 교사용 독도 교수·학습교재 개발
· 뉴미디어 활용 독도 교수학습 콘텐츠 개발보급

· 위탁사업비	=	20,000	천원
- 교육청업무외부위탁비용	20,000,000×1기관	=	20,000 천원

자료 : 2020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4.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남승우

사업평가팀장 이정수

분 석 관 원동아

☎ 02-2180-7953

e-mail : dongya1@seoul.go.kr